

개인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

제1조 (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계약에서 "법"이라 합니다) 제24조에 의하여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이 계약에서 "이 제도"라 합니다)를 설정한

가입자 명

(이 계약에서 "가입자"라 합니다)와 주식회사 하나은행(이 계약에서 "은행"이라 합니다)이 이 제도의 운용관리업무 수행을 위하여 개인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이 계약에서 "이 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입자"라 함은 법 제24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이 제도를 설정한 사람을 말합니다.
가.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자
나.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가입자로서
자기의 부담으로 개인형퇴직연금 제도를 추가로 설정하려는 자
다. 자영업자
라. 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퇴직급여제도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자로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마. 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퇴직급여제도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자로서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바. 법 제8조제1항 항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적용받고 있는 근로자
사.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아.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군인
자.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교직원
차. 「별정체우체국법」의 적용을 받는 별정체우체국 직원
 2. "운용관리기관"이라 함은 이 제도를 설정한 가입자와 법 제28조 제1항에서 규정한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운용관리계약을 체결한 퇴직연금사업자를 말합니다.
 3. "자산관리기관"이라 함은 이 제도를 설정한 가입자와 법 제29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산관리계약을 체결한 퇴직연금사업자를 말합니다.
 4. "급여"라 함은 가입자가 이 제도로부터 지급받는 연금 또는 일시금을 말합니다.
 5. "급여이전"이라 함은 가입자가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하지 않고 이 제도로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6. "연금지급기준일"이라 함은 연금지급개시의 기준이 되는 날을 말하며, 연금지급기준일부터 연금지급주기(월, 분기, 연단위 등) 만큼 지난 날에 최초 연금이 지급됩니다.
 7. "적립금"이라 함은 급여이전 또는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적립된 자금을 말합니다.
 8. "사전지정운용제도"란 가입자가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 사전에 지정한 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을 운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9. "사전지정운용방법"이라 사전지정운용제도에 따라 적립금을 운용하기 위하여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운용방법을 말합니다.
 10. "현금성 자산"이라면 가입자와 제8조에 따른 운용지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는 운용방법을 말하며, 자산관리계약에 형태에 따라 보험계약은 금리연동형, 신탁계약은 대기자금 운용을 위해 자산관리기관이 제공하는 운용방법을 말합니다.
 11. "로보어드바이저 투자일임계약"이라 전자적투자조언장치를 활용하여 손님으로부터 금융투자상품 등에 대한 투자판단을 일임받아 금융투자상품 등을 취득, 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등, 개인형퇴직연금 제도 적립금 운용을 목적으로 투자일임사업자와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 간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규칙(이 계약에서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합니다) 및 퇴직연금감독규정(이 계약에서 "규정"이라 합니다)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3조 (운용관리업무)

- ① 이 계약에 의해 은행이 수행하는 업무(이 계약에서 "운용관리업무"라 합니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로 합니다.
 1. 가입자에 대한 적립금 운용방법의 제시 및 운용방법별 정보의 제공
 2. 사전지정운용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업무
 3. 적립금 운용현황의 기록·보관·통지
 4. 가입자(가입자와 로보어드바이저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일임사업자를 포함합니다)가 선정한 운용방법을 자산관리기관에 전달하는 업무
 5. 가입자의 급여지급 신청, 중도인출 신청을 자산관리기관에 통지하는 업무
 6. 그 밖에 시행령에서 운용관리업무로 정하는 업무
- ② 은행은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업무를 법령에서 정한 인적·물적 요건을 갖춘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 ③ 제2항의 세부내용은 "운용관리계약 부속협정서"(이 계약에서 "부속협정서"라 합니다)에 정합니다.

제4조 (계약기간)

이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제17조에 의한 계약해지일, 제18조에 의한 계약 이전일 또는 계약종료일까지로 하며, 계약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간으로 구분합니다.

1. 적립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연금지급기준일 전일까지의 기간(다만, 제15조에서 정한 연금지급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계약해지일까지의 기간)으로 합니다.
2. 연금지급기간
연금지급기준일로부터 종료일(최종 연금지급일), 계약해지일 또는 계약이전일까지의 기간으로 합니다. 다만, 계약체결일에 연금지급을 신청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연금지급기간이 시작되는 것으로 합니다.

제5조 (서류의 제출)

가입자는 이 계약을 체결할 때 제2조에 따른 이 제도의 설정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은행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6조 (가입자 및 은행의 의무)

- ① 은행은 이 계약상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 ② 은행은 이 계약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운용관리업무의 일부(이 계약에서 "재워탁업무"라 합니다)를 재워탁기관에게 수행하게 한 경우 및 제19조의 가입자교육 업무의 일부를 재워탁한 경우에는 재워탁업무가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합니다.
- ③ 가입자는 은행이 제3조의 운용관리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7조 (적립금운용방법의 제시 및 운용방법별 정보의 제공)

- ① 은행은 적립금 운용방법을 제시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운용방법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1. 운용방법에 관한 정보의 축수와 이해가 쉬울 것
 2. 운용방법의 변형성이 쉬울 것
 3. 적립금 운용결과의 평가방법과 절차가 투명할 것
 4. 적립금의 증정기·인정적 운용을 위하여 분산투자 등 시행령이 정하는 운용방법 및 기준 등에 따른 것
 5.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운용방법 중 적합한 운용방법을 가입자에게 제시합니다.
 1. 예적금, 최저보증이율 등의 형태로 원리금의 지급을 보장하는 보험계약, 환매조건부 매수계약, 파생결합

사채(원금보장형), 발행이음, 표지어음, 증권금융회사가 금융투자업자 등으로부터 예탁받은 자금으로 취급하는 예탁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이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는 사회기반시설채권

2. 국채증권,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기타 정부보증채권
 3. 자방채증권
 4. 투자적격 특수채(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은 제외합니다) 및 사채권
 5. 투자적격 해외채권
 6. 투자적격 기업어음증권
 7. 투자적격 주택저당증권 및 학자금대출증권
 8. 상장주식 및 국내 상장 증권예탁증권(주식을 근거로 발행되어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것)
 9. 해외 상장주식
 10. 집합투자증권 등(실적배당형 보험을 포함)
 11. 파생결합증권
 12. 장내 및 장외파생상품 거래계약
 13. 기타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가입자와 은행이 협의한 운용방법
- ③ 은행은 제2항에서 제시한 운용방법에 해당하는 상품 중 계약체결일부터 매 반기 1회 이상 원리금보장상품을 포함한 위험과 수익구조가 서로 다른 3가지 이상의 운용상품을 가입자에게 제시합니다.
- ④ 가입자는 은행이 제시한 운용방법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하여 운용지시를 할 수 있으며, 은행이 제시하는 운용방법을 다른 운용방법(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운용방법에 한합니다)으로 변경하거나 추가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⑤ 은행이 제공하는 적립금 운용방법에 대한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이익의 예상 및 손실 가능성에 관한 사항
 2. 운용방법에 관한 고지 3년(과거운용기간이 3년이 안 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이익 또는 손실 관리 실적
 3. 운용방법을 선택 또는 변경한 경우에 발생하는 비용 및 그 부담 방법에 대한 정보
 4.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이 되는지에 관한 정보
 5. 기타 가입자와 운용지시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 등
- ⑥ 적립금 운용방법 및 운용방법별 정보제공은 대면, 서면 또는 은행과 가입자의 협의에 의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기타의 방법(e-mail, 전자문서, Web 등)으로 통지합니다.

제7조의2(가입자에 대한 사전지정운용방법 정보제공)

① 은행은 법 제21조의2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전지정운용방법을 가입자에게 제시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 제공하여야 합니다.

1. 사전지정운용방법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자산배분현황, 위험·수익구조, 손실가능성 및 과거 수익률
 - 나. 수수료 등 가입자가 부담하는 비용에 관한 사항
 - 다. 예금자보호한도 등 가입자의 보호에 관한 사항
 - 라.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적용에 따른 퇴직연금자산의 위험도 변경 가능성
 - 마.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승인일자 등 승인에 관한 사항
 2. 법 제21조의3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관한 사항
 3. 법 제21조의3제6항에 따라 사전지정운용방법이 변경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절차
- ③ 은행은 가입자에게 제2항에 따른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정보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의 형태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합니다.
1. 우편 발송
 2. 서면 교부
 3. 정보통신망에 의한 전송
 4.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서 당사자가 합의한 방법

제7조의3(가입자의 사전지정운용방법 선정 및 변경)

① 가입자는 제7조의2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전지정운용방법 중 하나를 본인이 적용 받을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합니다.

② 가입자는 제1항에 따라 선정한 사전지정운용방법을 다른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에따라, 가입자별로 하나의 사전지정운용방법만 선정해야 합니다.

③ 제1항에 따른 선정 여부를 불문하고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을 운용하고 있지 않은 가입자는 은행이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승인 받은 사전지정운용방법 중 하나를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제7조의4(사전지정운용방법의 적용 및 통지)

① 은행은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선정한 가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 운용방법을 선정하지 않은 경우, 해당 가입자에게 지정한 사전지정운용방법에 따라 적립금이 운용됨을 통지해야 합니다.

② 가입자가 제1항에 따라 선정한 사전지정운용방법을 다른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에따라, 가입자별로 하나의 사전지정운용방법만 선정해야 합니다.

③ 제1항에 따른 선정 여부를 불문하고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을 운용하고 있지 않은 가입자는 은행이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승인 받은 사전지정운용방법 중 하나를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제7조의5(은행의 사전지정운용방법 변경)

- ① 은행은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선정한 가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 운용방법을 선정하지 않은 경우, 해당 가입자에게 지정한 사전지정운용방법에 따라 적립금이 운용됨을 통지해야 합니다.
 1. 가입자가 제1항에 따라 가입하여 부담금을 납입한 날의 다음 영업일
 2. 가입자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스스로 선정한 적립금 운용방법의 기간 만료일부터 4주 경과한 날의 다음 영업일
- ② 은행이 제1항에 따라 가입자에게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이 운용됨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통지해야 합니다.
 1. 2주 이내에 운용방법을 선정하지 아니할 경우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된다는 사실
 2. 가입자가 선정한 사전지정운용방법에 관한 정보로서 제7조의2제4항 각 호의 정보
 3.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된 이후 언제든지 제5항에 따라 다른 운용방법을 선정할 수 있다는 사실
 - ③ 가입자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후 2주 이내에 운용방법을 선정하지 아니할 경우 은행은 해당 가입자의 적립금을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하며, 이 경우 가입자가 스스로 운용방법을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선정한 것으로 볼니다.
 - ④ 가입자가 제7조의3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선정하지 않은 경우 은행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적립금을 운용합니다.
 1. 가입자가 이 제도에 가입하여 부담금을 납입한 경우 부담금 납입 다음 영업일에 현금성 자산으로 투입
 2. 가입자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스스로 선정한 적립금 운용방법의 기간 만료일 다음 영업일에 현금성 자산으로 투입
 - ⑤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을 운용하는 가입자는 언제든지 법 제21조에 따라 적립금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제7조의5(은행의 사전지정운용방법 변경)

① 은행은 법 제21조의3제6항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사전지정운용방법의 변경 승인을 받은 경우, 그 사설을 변경 승인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사전지정운용방법을 본인이 적용받을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선정하였거나, 해당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이 운용되고 있는 가입자에게 제7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입자 통지 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1. 사전지정운용방법 변경 사유
 2. 변경된 사전지정운용방법에 관한 정보
 3. 변경 승인을 받은 후 14일이 지난 날부터 가입자의 적립금이 변경된 사전지정운용방법에 따라 운용될 수 있다는 사실
 4. 가입자가 항명하는 경우 변경된 사전지정운용방법이 아닌 다른 운용방법을 선정할 수 있다는 사실
 5. 적립금이 변경된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된 이후에도 가입자는 언제든지 다른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할 수 있다는 사실
- ③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가입자가 변경된 사전지정운용방법이 아닌 다른 운용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은행은 변경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날부터 가입자의 적립금을 변경된 사전지정운용방법에



따라 운용할 수 있습니다.

④ 은행은 사전지정운용방법 변경으로 인해 가입자의 적립금 운용방법이 변경될 때 가입자에게 중도해지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제7조의6(사전지정운용방법의 승인 취소에 따른 조치)

- ① 은행의 사전지정운용방법이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승인 취소된 경우, 은행은 해당 사전지정운용방법을 본인이 적용 받을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선정하였거나, 해당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이 운용되고 있는 가입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즉시 통지해야 합니다.
 - 1. 승인 취소 사유
 - 2. 승인 취소된 사전지정운용방법의 해지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 3. 다른 사전지정운용방법을 포함한 3가지 이상의 운용방법에 관한 정보로서 법 제21조의3제1항제1호 및 영 제13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보
-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가입자가 다른 운용방법을 선정한 경우에는 가입자의 적립금을 가입자가 선정한 다른 운용방법으로 이전하여 운용해야 합니다.
- ③ 제2항에 따라 적립금을 이전하여 운용하는 경우 은행은 적립금을 이전한 운용방법에 관한 정보로서 법 제21조의3제1항제1호 및 영 제13조의2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에 관한 정보를 가입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 ④ 은행은 제1항 통지를 받은 가입자가 해당 사전지정운용방법을 해지하지 않거나 다른 운용방법을 선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입자의 적립금을 같은 위험등급의 다른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이전하여 운용할 수 있습니다.
- ⑤ 제4항에 따라 적립금을 이전하여 운용하는 경우 은행은 해당 가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해야 합니다.
 - 1. 적립금을 이전하여 운용한다는 사실
 - 2. 적립금을 이전한 운용방법에 관한 정보로서 법 제21조의3제1항제1호 및 영 제13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보
- ⑥ 은행은 사전지정운용방법 취소로 인해 가입자의 적립금 운용방법이 변경될 때 가입자에게 중도해지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제8조 (적립금 운용방법의 선정 및 변경)

- ① 가입자는 제7조에 의한 운용방법 중에서 운용방법의 선정 및 변경(이 계약에서 "운용지시"라 합니다)을 다음 각 호의 하나의 방법으로 은행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 인터넷 또는 서면을 통하여 신청
 - 2. 은행의 고객창구를 통하여 신청
 - 3. 기타 은행과 가입자가 합의한 방법
- ② 가입자는 부담금을 자산관리기관에 입금하기 전까지 적립금 운용방법을 선정하여 은행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최초 가입시 운용방법을 정하지 않은 경우 은행은 기한을 정하여 가입자에게 운용지시를 하도록 통지합니다.
- ③ 은행은 가입자에게 운용중인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제7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운용방법 등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원리금 보장 운용방법으로 이하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이라고 합니다.)의 만기가 도래하기 전까지 가입자가 운용지시하도록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가입자가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의 만기도록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④ 은행은 제7조의4의 통지를 할 경우, "만기 예정일의 직전 영업일 전까지 가입자의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 제7조의4가 적용되어, 만기 이후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이 운용되기 전까지 가입자의 적립금 운용은 개별 상품 약관에 따릅니다. 다만, 상품 약관에 별도로의 약정사항이 있는 경우 현금성 자산으로 운용됩니다."라는 문장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⑤ 제3항에 따라 가입자가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의 만기도록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로 표시한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내용의 통지를 법 제18조에 따른 적립금 운용현황 통지시 포함하여 통지하도록 합니다.
- ⑥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가 급여를 신청한 이후에 납입된 부담금에 대해서는 급여가 지급되기 전까지 운행이 신의성실 원칙에 의해 합리적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 ⑦ 가입자가 법령에서 정한 적립금 운용방법 및 위험자산 종류별 투자한도를 위반하여 운용지시하는 경우, 은행은 규정에 따라 해당 운용지시를 거절하고 운용지시자에게 해당 위반 사실 및 그 시기에 필요한 소지를 즉시 통보하여야 합니다.
- ⑧ 복수의 상품으로 구성된 사전지정운용방법의 경우 구성상품을 개별적으로 매도할 수 없습니다.
- ⑨ 제 1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가 로보어드바이저 투자일정계약을 체결한 경우 투자일정의 내용에 따라 투자 일정업자가 가입자에게 적응될 퇴직연금의 운용방법 선정 및 변경을 은행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9조 (적립금 운용지시의 전달)

은행은 가입자(가입자와 로보어드바이저 투자일정계약을 체결한 투자일정사업자를 포함합니다)로부터 통지받은 적립금의 운용지시를 통지받은 날을 포함하여 3영업일(이하 "운용지시기일"이라 합니다) 이내에 자산관리기관에 전달하고 그 내역을 기록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청서 등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이 완료된 날을 포함하여 3영업일 이내에 전달합니다.

제10조 (적립금 운용현황의 기록·보관·통지)

- ① 은행은 매년 1회이상 가입자의 적립금 및 운용수익률 등 적립금 운용현황을 가입자에게 통지하고 그 내역을 보관하여야 합니다.
- ② 은행은 제1항의 통지를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하나의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 1. 우편 발송
 - 2. 서면 교부
 - 3. 정보통신망에 의한 전송
 - 4. 그 밖에 가입자와 은행이 합의한 방법
- ③ 은행은 제1항 이외의 적립금 운용수익률의 통지 등을 별도로 법령에 정하는 경우 해당 내용에 따라 통지합니다.

제11조 (부담금의 납입 등)

- ① 가입자는 법 제2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별도의 계약을 체결한 자산관리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1. 일시부담금
가입자가 퇴직급여제도에서 수령한 일시금 중 납입하는 금액
 - 2. 개인부담금
가입자가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납입하는 금액
 - 3. 연금저축계좌 이체부담금
가입자가 관련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연금저축계좌에서 이체하는 금액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는 이 계약 이외의 다른 계약으로부터의 계약이전, 가입자의 급여이전 등에 의한 적립금을 자산관리기관에 납입할 수 있습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는 연금지급기준일 이후부터는 부담금을 납입할 수 없습니다.

제12조 (운용관리수수료)

은행은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속협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운용관리수수료를 징수합니다.

제13조 (가입자정보의 통지 및 변경)

- ① 가입자는 주민등록번호, 주소(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합니다), 전화번호 등 이 제도를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이 계약에서 "가입자정보"라 합니다)를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한 방법으로 은행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의 가입자정보에 변경이 있는 경우 가입자는 그 내용을 제1항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은행에 신속히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은행은 재워탁기관을 선정한 경우 통지받은 가입자정보를 재워탁기관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④ 은행 및 재워탁기관은 가입자로부터 통지 받은 가입자정보의 유류 또는 통지 지역에 따른 손해에 대해 은행 및 재워탁기관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접근마체(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0호)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마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14조 (가입자정보의 취급 및 제공)

- ① 은행은 이 계약의 업무수행 중 취득한 가입자정보를 이 계약과 관련된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 ② 은행은 자산관리기관에 대상 운용관리기관 등에 운용관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각 기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가입자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③ 은행은 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제3조제2항에 의해 운용관리업무 일부의 위탁을 받은 자에게도 제1항의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제15조 (급여의 지급)

- ① 가입자는 은행을 통하여 자산관리기관에 급여지급을 청구하며, 은행은 급여의 종류 및 수급요건 등을 확인한 후 자산관리기관에 급여지급의 청구를 전달합니다.
- ② 가입자는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금의 경우 만 55세 이후부터 수령 가능하며, 가입자가 특별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때에는 매년 지급받는 연금액은 법, 세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금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 이내로 합니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만 55세 미만의 가입자가 일시금 수령을 원할 경우 제17조의 중도해지 규정에 따라 일시금을 자급합니다.
- ④ 가입자가 연금으로 급여를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은행이 정한 연금지급 신청서류에 다음 각 호의 조건(이 계약에서 "연금지급조건"이라 합니다)을 기재하여 은행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연금지급기간
 - 2. 연금지급주기(월, 분기, 반기, 연)
 - 3. 연금지급기준일
 - 4. 연금지급액 산정방식
 - 5. 자산매각순서
 - 6. 기타 연금의 지급을 위하여 은행 및 자산관리기관이 필요로 하는 사항
- ⑤ 연금지급은 은행이 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합니다.
- ⑥ 가입자는 잔존 연금지급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제4항에서 정한 연금지급 조건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금 지급을 위한 신탁재산 매각증에는 조건변경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16조 (담보제공 및 중도인출)

- ① 이 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법령에서 정하는 한도 이내에서 담보제공 또는 중도인출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입자는 법령에서 정하는 담보제공 또는 중도인출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를 은행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제4호의 2와 제5호의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담보제공만 가능합니다. 제7호의 경우에는 중도인출만 가능합니다.
- 1.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2. 1인2호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 3. 2. 가입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비를 말합니다.)를 부당하는 경우
 - 가. 가입자 본인
 - 나. 가입자의 배우자
 - 다.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양가족을 말합니다. 이하 "부양가족"이라 합니다.)
- 4. 담보를 제공하는 날(중도인출의 경우 중도인출신청일)부터 역신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4. 담보를 제공하는 날(중도인출신청일)부터 역신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까지 결정을 받은 경우
- 4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대학등록금, 혼례비 또는 장례비를 가입자가 부담하는 경우
 - 가. 가입자 본인
 - 나. 가입자의 배우자
 - 다.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 5. 사업주의 휴업 실시로による 가입자의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 6.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합니다.)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유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 7. 법 제7조제2항 후단에 따라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로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가입자가 그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중도인출금액은 대출 원리금의 상환에 필요한 금액 이하로 합니다.
- ③ 제2항의 중도인출의 경우, 은행은 가입자가 사전에 정한 자산매각순서에 따라 자산매각 운용지시를 자산관리기관에 전달하여야 합니다. 다만, 가입자가 사전에 자산의 매각순서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속협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매각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17조 (중도해지)

- ① 가입자는 이 계약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② 은행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1. 가입자의 계약 관련 서류 기재내용상 중요부분에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
 - 2. 관련 법령 등에 의하여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
- ③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은행이 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가입자에게 1개월 이전에 서면 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 ④ 가입자는 이 계약을 다른 운용관리계약으로 이전(이 계약에서 "계약이전"이라 합니다)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련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연금저축계좌로 계약 이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③ 은행은 가입자로부터 계약이전 요청을 받은 경우, 계약이전 신청을 받은 날을 포함하여 3영업일까지 자산관리기관에 전달합니다. 다만, 신청서 등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이 완료된 날을 포함하여 3영업일까지 전달합니다.
- ④ 은행이 은행의 책임 있는 사유로 제2항에서 정한 운용지시기일 내에 계약이전을 위한 보유자산 매도지시를 자산관리기관에 전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경우에 따른 연금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실제 자산관리기관에 전달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자연보상금을 금액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자산관리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로 제21조(면책) 제1항에 규정된 사유들로 인해 전달이 되는 경우에는 자연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⑤ 제4항의 자연보상금은 운용지시기일 시점에 자산관리기관에 통지하여 정상 지급되었어야 할 금액(이하 "정상 처리시 지급액"이라 합니다)에 운용지시기일의 다음날부터 실제 자산관리기관에 계약이전 신청을 전달한



- 가. 기본수수료 : 적립금의 운용성과에 상관없이 산정되는 수수료로, 제3호에 따른 운용관리수수료율에 80%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 나. 손익수수료 : 적립금의 운용성과에 따라 산정되는 수수료로, 제3호에 따른 운용관리수수료율에 20%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 다. 기준지표 : 운용손익의 판단기준이 되는 수치로서 개별 사전지정운용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적용 하되, 해당 값이 음수로 산정되는 경우에도 은행은 0을 초과한 값을 적용합니다.
- 개별 사전지정운용방법의 기준지표 = (최근 공시된 하나은행 안정형 사전지정운용방법 공시수익률 X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주식 외 비중) + (위험자산 기준수익률 X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주식 비중)
- (1) “최근 공시된 하나은행 안정형 사전지정운용방법 공시수익률”이란 매분기 고용노동부를 통하여 공시되는 하나은행 안정형 사전지정운용방법의 12개월 수익률을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값을 의미하며, 매분기말 기준으로 12개월 수익률을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값을 의미합니다.
- (2) “위험자산 기준수익률”이란 KOSPI 지수의 과거 10년 기간동안 매일 3년의 수익률을 산출, 이 3년 수익률의 표본의 평균값을 기하평균하여 연환산한 값을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값을 의미하며, 위험자산 기준수익률은 매 분기말 기준으로 익월 재산정하여, 익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
- (3) 개별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주식 외 비중 및 주식 비중은 정수로 산정하며 매 분기말 기준으로 익월 재산정하여 익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
- (4) 산정된 개별 사전지정운용방법의 기준지표는 하나은행 퇴직연금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합니다.
- 라. 사전지정운용방법 수익률은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수수료 계산기간에 대하여 다음의 기간수익률을 연환산하여 적용하되,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합니다. 단, 2024년 4월 1일 이전 체결한 개인형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의 경우, 사전지정운용방법별 수익률을 산정시 수수료 할인 제도 시행 일인 2024년 4월 1일부터 산정합니다.
- [수수료 계산기준일 전일까지 사전지정운용방법별 적립금 자산평가액 + 수수료 계산기간 중 발생한 지급액(증도인출, 연금지급 등)]/[계약일 또는 수수료 직전 계산 기준일의 사전지정운용방법별 적립금 자산평가액 + 부담금납입액]-1

<제3호의2에 따른 운용관리수수료율 적용 예시>

기준지표 대비 성과구간	사용자부담금		개인부담금	
	1억미만	1억이상	1억미만	1억이상
초과 성과(A)	0.25% (0.15%)	0.20% (0.15%)	0.08% (0.03%)	0.06% (0.03%)
동일(B)	0.20% (0.12%)	0.16% (0.12%)	0.064% (0.024%)	0.048% (0.024%)
미달 성과(C)	0.15% (0.09%)	0.12% (0.09%)	0.048% (0.018%)	0.036% (0.018%)

※ () 안은 전자금융으로 신규 계약한 경우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운용관리수수료에 대하여 계약 경과년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계약 경과년수	2차년도	3차년도	4~5차년도	6~7차년도	8차년도 이후
할인율	10%	12%	15%	18%	20%

- 4의2. 제4호를 적용함에 있어 개인형퇴직연금으로 퇴직연금사업자와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을 이 계약의 최초 계약일로 간주하여 계약경과년수를 계산합니다. 이 경우 가입자는 최초 계약일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운용관리수수료는 대기자금이 있는 경우 대기자금에서 우선적으로 취득할 수 있고, 대기 자금이 부족할 경우 부족한 금액의 105/100에 상당하는 적립금 자산을 매각하여 취득할 수 있으며, 적립금자산 매각금액에서 운용관리수수료를 초과하는 금액은 은행이 신의성실 원칙에 의해 합리적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6. 제5호에도 불구하고 적립금이 운용관리수수료 금액에 미달할 경우 은행은 미달하는 수수료 금액을 가입자에게 별도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7. 제1호 내지 제5호의 적립금자산 평가액은 시장가격(시장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정가액 등)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8. 제1호 내지 제3호의 운용관리수수료를 징수하는 시점에 가입자의 연령이 만19세 이상이고 만34세 이하인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운용관리수수료에 대하여 70%의 할인율을 적용하며, 제4호에 의한 계약경과년수에 따른 할인율과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9. 가입자가 계약서 제15조에 따라 연금지급을 신청하여 1회 이상 연금으로 굽여를 수령한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운용관리수수료를 면제합니다.
10. 가입자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제출하여 확인된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의 운용관리수수료에 대하여 50%의 할인율을 적용하며, 제4호에 의한 계약경과년수에 따른 할인율과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아래의 경우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퇴직급여제도로부터 일시부담금이 최초 입금된 날로부터 가입자가 30일 이내 계약해지 신청을 한 경우 해당 기간의 운용관리수수료를 면제합니다.
- 제1호에도 불구하고 최초 부담금 입금일로부터 30일 초과 시에는 전 기간에 대해 운용관리수수료를 징수 합니다.
-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가입자가 자기의 부담으로 납입하는 개인부담금의 경우에는 운용관리수수료를 면제하지 않습니다.

제4조 (적립금자산의 매각순서)

- ① 계약서 제15조에서 가입자가 사전에 적립금자산의 매각순서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자산을 매각하는 것으로 합니다.
- MMF
 - 정기예 · 적금
 - 원리금보장상품으로만 구성된 사전지정운용방법
 - 발행어음
 - 환매조건부채권(RP)
 - 이율보증형보험(GIC)
 - 파생결합사채(ELB/DLB) 원리금보장형
 - 집합투자증권(채권형)
 - 집합투자증권(채권혼합형)
 - 집합투자증권(주식혼합형)
 - 집합투자증권(주식형)
 - 원리금보장상품과 집합투자증권이 혼합 구성된 사전지정운용방법
 - 집합투자증권으로만 구성된 사전지정운용방법
 - 로보어드바이저 투자일정계약에 따른 일임재산
 - 실물유기증권(주식, 채권)
 - 파생결합사채(ELB/DLB) 원금보존구형
 - 제8호 내지 제11호 또는 제12호 내지 제13호의 집합투자증권에서 동일 유형상품 또는 사전지정운용방법의 경우 주식편입비율이 낮은 것을 우선순위로 합니다.
 - 제14호의 로보어드바이저 투자일정계약을 복수로 운용중인 경우 이들간의 매도순서는 사전에 자정된 투자일정 매도순서에 따르며, 해당 투자일정업자의 매도통지에 따라 일임재산으로 운용중인 금융상품을 매도합니다.
 - 상기 각 호에서 정하지 아니한 자산이 있는 경우 은행은 가입자에게 손해가 가장 적은 방법을 택하여 매각하는 것으로 합니다.

- ② 운용관리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와 자산관리기관의 자산매각 요청이 있는 경우의 적립금자산 매각순서는 계약서 제15조에 의해 가입자가 사전에 정한 자신의 매각순서를 준용하며, 가입자가 사전에 매각순서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매각순서를 준용합니다.

제5조 (가입자 교육)

- ① 계약서 제19조에 의하여 실시하는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납입한도
 -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금여종류 별 수급요건 및 충도인출
 - 연금소득세, 퇴직소득세 등 과세체계에 관한 사항
 - 가입자의 소득, 자산, 부채, 연령 및 근속연수 등을 고려한 자산, 부채관리의 일반적 원칙과 노후설계의 중요성에 관한 사항
 - 분산투자, 적립식 투자 등 안정적 투자 원칙에 관한 사항
 - 사업자가 제시하는 적립금 운용방법별 위험과 수익에 관한 사항
 - 수급권의 보호 및 계약이전 절차
 - 기타 가입자가 요청하여 은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은행은 다음의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가입자 교육을 실시합니다.
-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한 교육자료의 발송
 - 연수 · 회의 · 강의 등의 집합교육
 -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
 - 은행은 매년 1회이상 가입자 교육을 실시합니다.
 - 은행은 교육의 원활한 시행 등을 위하여 일부교육을 재위탁할 수 있습니다.
 - 제2항제1호에서 정한 교육방법의 경우 가입자가 제출한 가입자의 주소(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합니다)로 은행이 교육내용을 송부함으로써 은행은 그 책임을 다하는 것으로 합니다.

년 월 일

개인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와 [별지1] 개인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 부속협정서의 계약 내용을 설명 듣고 이해하였으며, 이에 대해 하나은행과 계약을 체결합니다.

가입자	주소 :
	성명 : (인)
은행	주소 :
	성명 : (인)

개인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 제31조(계약서의 작성 · 보관)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 및 [별지1] 개인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 부속협정서를 1부 작성하고 그 사본을 교부받는데

- 동의합니다(계약서 사본 교부).
- 동의하지 않습니다(원본 2부를 작성하여 원본 1부 교부).

※ 이 계약서는 법령 및 내부통제절차를 준수하여 제공됩니다.



개인형퇴직연금 자산관리신탁계약서

제1조 (신탁의 목적)

이 계약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계약에서 “법”이라 합니다) 제24조에 의하여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이 계약에서 “이 제도”라 합니다)를 설정한

위탁자

가입자 명

와 수탁자 주식회사 하나은행(이 계약에서 “은행”라 합니다)이(가) 이 제도의 자산관리업무 수행을 위하여 개인형퇴직연금 자산관리신탁계약(이 계약에서 “이 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자”라 함은 법 제24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이 제도를 설정한 사람을 말하며, 이 계약의 위탁자 겸 수익자를 말합니다.
가.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자
나. 확정형여정퇴직연금제도 또는 확정기여정퇴직연금제도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가입자로서 자기의 부담으로 개인형퇴직 연금제도를 추가로 설정하려는 자
- 다. 자영업자
라. 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퇴직급여제도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자로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마. 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퇴직급여제도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자로서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바.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급여제도를 적용받고 있는 근로자
사.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아.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군인
자.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교직원
차. 「발전정부체육국법」의 적용을 받는 발전정부체육 직원
2. “운용관리기관”이라 함은 이 제도를 설정한 가입자와 법 제28조 제1항에서 규정한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운용관리기�이자로써 퇴직연금사업자를 말합니다.
3. “자산관리기관”이라 함은 이 제도를 설정한 가입자와 법 제29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산관리계약을 체결한 퇴직연금사업자를 말합니다.
4. “자산보지계약”이라 함은 법 제29조제2항에 의한 신탁계약 또는 보험계약을 말합니다.
5. “금여”라 함은 가입자가 이 제도로부터 지급받는 연금 또는 일시금을 말합니다.
6. “연금지급기준일”이라 함은 연금지급개시의 기준이 되는 날을 말하며, 연금지급기준일부터 연금지급주기(월, 분기, 연단위 등)만큼 지난 날에 최초 연금이 지급됩니다.
7. “적립금”이라 함은 금여이전 또는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적립된 자금을 말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규칙(이 계약에서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합니다) 및 퇴직연금감독규정(이 계약에서 “규정”이라 합니다)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3조 (신탁금액)

- ① 가입자는 이 계약 체결일 이후에 퇴직연금제도의 퇴직자산을 신탁합니다.
- ② 가입자는 퇴직자산 외에 별도로 자신의 부담으로 금전을 추가로 신탁할 수 있습니다.
- ③ 제2항에서 가입자 본인의 부담으로 신탁하는 금액의 합은 관련 법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④ 은행은 제1항 및 제2항에서 성한금액 이외에 계약이전(가입자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연금 저축계좌에서 이 계약으로의 이체를 포함) 등의 사유로 다른 자산관리계약으로부터 이전되는 금액을 수탁 받을 수 있습니다.
- 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는 연금지급기준일 이후부터는 추가로 신탁할 수 없습니다.

제4조 (신탁기간)

신탁기간은 신탁계약 체결일로부터 제17조에 의한 신탁계약 해지일, 제19조에 의한 신탁계약이전일, 제20조에 의한 신탁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며, 다음 각 호의 기간으로 구분합니다.

1.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연금지급기준일 전일까지의 기간(다만, 운용관리기관에 연금지급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탁계약 해지일, 신탁계약 이전일, 신탁계약 종료일까지의 기간)으로 합니다.
2. 연금지급기간 : 연금지급기준일로부터 신탁계약 해지일, 신탁계약 이전일, 신탁계약 종료일, 또는 최종연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으로 합니다. 다만, 계약체결일에 연금지급을 신청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연금지급 기간이 시작되는 것으로 합니다.

제5조 (신탁관계인)

- ① 이 신탁의 가입자는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수 있는 자에 한합니다.
- ② 이 계약의 원본 및 이익의 수익자는 가입자로 합니다.
- ③ 수익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수소(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합니다), 자산금액 및 기타 수익자에 관련된 사항은 운용관리기관이 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6조 (운용관리기관의 신고)

- ① 가입자는 운용관리기관을 지정하여 은행이 정한 방법으로 은행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운용관리기관이 변경·취소되었을 경우에도 은행이 정한 방법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 ② 은행은 운용관리기관으로부터 제3조에 의한 신탁금액에 관한 사항, 제7조제2항에 의한 신탁자산운용에 관한 사항, 제14조에 의한 신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제16조에 의한 양도·압류·담보제공 및 종도인출에 관한 사항, 운용관리기관이 운용관리계약에 따라 징수하여야 할 제 수수료 등에 대한 통지·운용지시·확인(이 계약에서 “통지”라 합니다)을 받아 업무를 수행합니다.
- ③ 은행은 제2항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을 운용관리기관과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제7조 (신탁재산의 운용)

- ① 신탁자산은 운용하기 위한 방법은 관련 법령에서 허용하는 바에 따릅니다.
- ② 가입자 또는 가입자를 대리하는 투자일임사업자가 신탁자산의 운용방법을 지정하여 운용관리기관에게 통보하며, 은행은 법 제28조에 의해 운용관리기관의 통지에 따라 신탁자산을 운용합니다.
- ③ 은행은 제2항의 통지가 도착한 날로부터 다음 영업일 이내에 해당 통지를 이행하며 해당 통지의 이행 사실은 운용관리기관에 통보합니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탁자산에 속하는 금전으로 제2항에 의한 운용관리기관의 통지가 없는 금전 중 지급 또는 운용을 위해 대기중인 자금(이 계약에서 “대기자금”이라 합니다)에 대해 고유계정대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 ⑤ 은행은 이 신탁자산을 다른 신탁자산과 구분하여 관리·운용합니다.

제8조 (원본과 이익의 보관)

이 신탁은 원본과 이익을 보관하지 않습니다.

제9조 (신탁재산의 보관, 예탁)

은행은 신탁자산 중 유가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국예탁결제원 또는 증권회사 등에 보관·예탁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신탁원본금액 및 이익계산)

이 신탁에 있어서 제3조제1항의 최초 신탁금액을 신탁원본금액으로 하고 제3조제2항 및 제4항에서 정한 추가 수탁이 있을 경우는 그 금액을 신탁원본 금액에 가산하고 제14조에서 정한 지급, 제17조에서 정한 신탁의 종도

해지, 제20조에서 정한 신탁이 종료할 때에는 운용관리기관의 통지에 따라 신탁원본 및 이익에서 차감합니다.

제11조 (신탁재산의 표시)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해야 합니다. 다만, 등기 또는 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유재산과 별도로 관리하는 방법으로 신탁재산임을 표기합니다.

제12조 (조세 및 세비금)

신탁재산과 관련된 세금, 기타 신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금전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가입자에게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제13조 (자산관리수수료)

은행은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별지1] 자산관리신탁계약 부속협정서(이 계약에서 “부속협정서”라 합니다)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자산관리수수료를 징수합니다.

제14조 (신탁금의 지급)

- ① 은행은 가입자가 55세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운용관리기관이 통지하는 바에 따라 신탁재산을 매각하여 일시금 또는 연금의 형태로 가입자에게 금전으로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에서 운용관리기관 및 은행의 정상적인 업무처리에도 불구하고 가입자의 운용지시가 지연되어 신탁금의 지급이 지연된 경우 은행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은행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③ 은행은 가입자의 중도인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운용관리기관이 통지하는 바에 따라 신탁재산을 매각하여 가입자에게 금전으로 지급합니다.
- ④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도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가입자가 신탁계약을 이전하는 등 다른 자산 관리계약으로 급여이전을 요청한 경우 은행은 이를 이행합니다.
- ⑤ 은행은 운용관리기관에 지급여이전을 요청한 경우 은행은 이를 부수료를 신탁재산에서 차감하여 운용관리기관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 ⑥ 제1항 및 제3항에 의한 신탁금의 지급은 퇴직소득세 및 연금소득세 등 신탁금 지급과 관련한 제세금 징수 절차가 완료된 이후에 지급합니다.
- ⑦ 은행은 운용관리기관에게 금여의 자금통지를 받은 날을 포함하여 3영업일(이 약관에서 “지급기일”이라 하며, 적립금 막대에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은 지급기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내에 금여를 지급해야 하며, 지급기일내에 금여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급기일까지 계산된 적립금에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행령 제11조에서 정한 이율을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단, 실제배당형 상품으로 운용되었을 경우 지급기일 시점에 정상 지급되어야 할 금액(이하 “정상 처리시 지급액”)보다 많은 때에는 그 차액을 더하여 보상합니다.
- ⑧ 제7항으로 불구하고 관련 법령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15조(신탁금 지급의 연기)에 해당하는 경우 등은 은행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제7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15조 (신탁금 지급의 연기)

유가증권 시장 등의 폐쇄, 휴장 또는 거래정지, 신탁재산의 매각·지연 등은행이 통제할 수 없는 시장상황 및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신탁금 지급을 위한 금전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은행은 가입자, 운용관리기관에게 즉시 통지하고 금전이 확보될 때까지 신탁금 지급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제16조 (양도 · 압류 · 담보제공 및 종도인출)

- ① 이 제도의 금여를 받을 권리가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는 법 제7조에서 정하거나 법 제24조에서 정한 경우로서 운용관리기관의 통지가 있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하는 한도 내에서 담보제공 또는 종도인출 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종도해지)

- ① 가입자는 이 계약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② 은행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가입자의 계약 관련 서류 기재내용상 중요부분에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
 2. 관련 법령 등에 의하여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
- ③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은행이 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가입자에게 1개월 이전에 서면 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 ④ 관련 법령 등에 의하여 해지가 불가피하여 종도해지할 경우에는 특별종도해지로 처리합니다.
- ⑤ 제4항에서 정한 사유 이외의 사유로 종도해지 할 경우에는 일반종도해지로 처리합니다.
- ⑥ 이 계약이 종도해지 되었을 경우, 은행은 운용관리기관의 통지에 따라 신탁재산을 이전하거나 신탁재산을 매각하여 가입자에게 금전으로 지급합니다.
- ⑦ 종도해지에 따른 신탁금의 지급기연에 관하여는 제14조 제7항을 준용합니다.

제18조 (신탁자(은행)의 사임)

- ① 은행은 수탁행위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가입자의 승낙 없이 임무를 사임할 수 없습니다.
- ② 은행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사임할 수 있습니다.
- ③ 은행이 사임하는 경우 가입자는 새로운 자산관리기관을 선임하는 것으로 합니다. 단, 가입자가 새로운 자산 관리기관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은행은 새로운 자산관리기관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④ 은행의 사임으로 인하여 가입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은행은 이에 대하여 순회배상 하도록 합니다.

제19조 (계약이전)

- ① 가입자는 이 계약을 다른 자산관리계약으로 이전(이 계약에서 “계약이전”이라 합니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연금저축계좌로 계약이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③ 은행은 사업하는 경우 가입자는 새로운 자산관리기관을 선임하는 것으로 합니다. 단, 가입자가 새로운 자산 관리기관을 선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은행은 새로운 자산관리기관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④ 은행의 사업으로 인하여 가입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은행은 이에 대하여 순회배상 하도록 합니다.
- ⑤ 제4항의 자연부양상금은 “정상 처리시 지급액”에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행령 제11조에서 정한 이율을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로 계산된 금액을 말합니다. 단, 실제배당형 상품으로 운용되었을 경우 “정상 처리시 지급액”보다 많은 때에는 그 차액을 더하여 보상합니다.

제20조 (신탁의 종료)

- ① 이 신탁이 종료되었을 경우 은행은 운용관리기관의 통지에 따라 신탁재산을 이전하거나 신탁재산을 매각하여 가입자에게 금전으로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탁금 지급을 위하여 청산사무가 필요한 경우 신탁금 지급일은 청산종료일의 다음 영업일로 합니다.

제21조 (퇴직소득세 등의 원천징수의무)

급여 등 신탁금의 지급에 따른 퇴직소득세 및 연금소득세 등의 원천징수 의무는 관련 세법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22조 (선관주의의무)

은행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신탁사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제23조 (면책)

- ①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의해 가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은행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사용된 확인수단(인감, 패스워드 등)이 가입자가 사전에 등록한 확인수단과 육안에 의하여 상당한 주의로써 동일한 것을 확인한 후에 가입자로부터의 지시·청구·통지·신청 또는 정보를 수령하여 실시한 사무처리
 2. 가입자로부터의 지시·청구·통지·신청 및 정보제공과 관련된 내용의 오류, 지연
 3. 가입자의 지시에 기초한 신탁사무처리
 4. 천재지변, 유가증권 시장의 폐쇄 등 불가피한 경우
 5. 운용관리기관의 통지에 기초한 신탁사무처리
 6. 운용관리기관의 통지에 저촉될 우려가 있어 은행이 수행을 거부한 경우
 7. 운용관리기관의 통지자체 또는 누락
 8. 기타 제1호 내지 제8호에 준하는 경우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0호)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24조 (부속협정서의 작성 및 변경)

- ①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가입자와 은행은 부속협정서를 체결합니다.
- ② 제1항에서 정하는 부속협정서 내용은 이 계약서의 일부로 구성합니다.
- ③ 계약체결 이후 가입자 또는 은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입자와 은행이 협의하여 부속협정서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25조 (인감신고)

- ① 가입자는 가입자의 인감을 확인하여 은행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는 인감대신 서명을 신고함으로써 인감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제26조 (신고사항)**
- 가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체없이 필요한 절차를 밟아 은행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 신고 또는 절차의 자연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은행은 은행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1. 증서·거래인감 등을 분실·도난·훼손하거나 변형하고자 할 때
 2. 가입자의 주소(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합니다). 인감 또는 명칭의 변경, 사망, 행위능력의 변동, 기타 계약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27조 (계약의 변경 등)

- ① 은행은 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은행의 고객창구와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자산관리신탁계약의 시행일 전에 비치 또는 게시합니다.
-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가입자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가입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자산관리신탁계약의 시행일 30일전까지 가입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변경 전 내용이 기존 가입자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가입자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 가입자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단순한 사항의 변경은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③ 은행은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가입자가 계약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자산관리신탁계약의 시행일 직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④ 가입자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자산관리신탁계약의 시행일 직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 ⑤ 은행은 자산관리신탁계약서를 은행의 고객창구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가입자가 요구할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자산관리신탁계약서를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⑥ 이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관련 법령에서 변경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기로 합니다. 이때, 은행은 관련 법령에 따라 변경되는 자산관리신탁계약의 시행일로부터 10일내에 가입자에게 통지합니다.
- 다만, 제2항 단서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제28조 (은행의 퇴직연금제도 관련 업무 중단 등에 따른 가입자 손실보상)

-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해 가입자에게 금전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손실을 보상해야 합니다. 단, 손실보상 방법은 은행의 다른 가입자와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1. 은행이 퇴직연금제도 관련 업무를 중단하기로 결정하고 퇴직연금사업자 등록을 신청
 2.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금융위원회의 퇴직연금사업자 등록 취소 처분

제29조 (분쟁의 조정)

- 이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은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30조 (조항해석 및 관할법원)

- ① 이 계약서 각 조항의 해석에 관하여 가입자와 은행의 의견이 상이할 경우 관련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자와 은행이 협의하여 그 내용을 합리적으로 결정합니다.
- ② 가입자 또는 은행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관할법원에 이 계약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31조 (관련법령 등의 준용)

-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신탁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처리합니다.

제32조 (계약서의 작성 보관)

- 이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가입자와 은행이 각각 이름을 기재하고 도장을 찍은 후 각자 1부씩 보관하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가입자가 요청하는 경우 계약서 1부만을 작성할 수 있고, 은행은 가입자에게 그 사본을 교부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은행은 가입자의 요청 시 원본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계약서는 2025년 3월 28일부터 시행합니다.

제2조 (경과조치)

시행일 전에 체결한 개인형퇴직연금(기업형) 자산관리신탁계약의 경우에는 자산관리수수료 변경과 관련하여 시행일 이후 처음 도래하는 계약응답일(연기준)부터 변경된 계약내용을 적용합니다. 단, 2024년 4월 1일 개정 자산관리신탁계약 부속협정서 시행에 따른 수수료 변경사항의 경우, 시행일부터 변경된 수수료 할인 제도를 적용합니다.

[별지1] 개인형퇴직연금 자산관리신탁계약 부속협정서

가입자 명

(이 협정서에서 "가입자"라 합니다)와 주식회사 하나은행(이 협정서에서 "은행"라 합니다)은
년 월 일 체결한 개인형퇴직연금 자산관리신탁계약서(이 협정서에서 "계약서"라 합니다)의
세부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협정합니다.

제1조 (수수료의 종류)

은행은 이 계약에 의하여 계약서 제13조에 따른 자산관리수수료를 징수합니다.

제2조 (수수료의 정수)

① 제1조의 자산관리수수료는 가입자가 부담합니다.

② 제1조의 자산관리수수료 징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산관리수수료는 매 계약응답일을 계산기준일로 하여 계약일 또는 직전 계산기준일로부터 해당 계산기준일 전일까지의 신탁재산평가액 평균잔액에 대하여 해당 계산기준일 전일현재의 신탁재산평가액에 해당하는 수수료율을 곱하여 계산하며, 매 계약응답일에 신탁재산에서 취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연금지급기간 중 자산관리수수료는 연금지급신청일 또는 매 연금 지급일을 계산기준일로 하여 직전 계산기준일로부터 해당 계산기준일 전일까지의 신탁재산 평가액 평균잔액에 대하여 당해 계산기준일 전일 현재의 신탁재산평가액에 해당하는 수수료율을 곱하여 계산하며, 은행이 매 연금 지급일에 연금지급액에 취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1의2. 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하나은행과의 계약경과년수가 4차년도 이상이고 자산관리수수료 계산기준일에 계산되는 누적수익이 '0'이 아닌 가입자에 한해 자산관리수수료의 계산기간동안 계약서 제7조 2항10호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평가액은 수수료계산기준액인 제1호의 적립금 자산평가액에서 제외합니다.

누적수익은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됩니다.

가. 누적수익 = 적립금 자산평가액 - 차감예정수수료 - 부담금납입액 + 인출액

나. 적립금 자산평가액 = 수수료계산기준일 전일 현재의 적립금 자산평가액

다. 차감예정 수수료 : 제1호 및 제2호 내지 제3호에 의해 계산된 수수료

라. 부담금납입액 : 계약서 제11조에 의해 최초 계약일 이후부터 수수료계산기준일 전일까지 납입된 금액의 누적금액

마. 인출액 : 계약서 제15조 및 제16조에 의해 최초 계약일 이후부터 수수료계산기준일 전일까지 인출된 금액의 누적금액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계약서 제14조에 의한 신탁금 일시금지급의 경우에는 신탁금 일시금지급신청일, 계약서 제14조에 의한 최종연금지급일, 계약서 제17조에 의한 중도해지의 경우에는 중도해지신청일, 계약서 제19조에 의한 계약이전의 경우에는 계약이전신청일, 계약서 제20조에 의한 신탁증여의 경우에는 신탁증여로 사용 발생일을 자산관리수수료의 계산기준일로 하여 일시금지급일, 최종연금지급일, 중도해지일, 계약이전일, 신탁증여일에 자산관리수수료를 징수합니다. 이때, 자산관리수수료의 계산기간은 직전 자산관리수수료 계산기준일로부터 해당 자산관리수수료 계산기준일의 전일까지로 합니다.

3. 제1호 및 제2호에 적용하는 자산관리수수료율은 해당 계산기준일 전일 현재의 퇴직재산으로 형성된 적립금과 가입자의 별도 부담으로 형성된 적립금을 합산한 신탁재산평가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이때, 각각의 적립금이 복수의 자산관리계약으로 나눠진 경우에도 신탁재산평가액을 합산하여 해당 구간의 수수료율을 적용합니다.

신탁재산 평가액	수수료율(연)
1억원 미만	0.20%
1억원 이상	0.18%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자산관리수수료에 대하여 계약 경과년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계약 경과년수	2차년도	3차년도	4~5차년도	6~7차년도	8차년도 이후
할인율	10%	12%	15%	18%	20%

4의2. 제4호를 적용함에 있어 개인형퇴직연금으로 퇴직연금사업자와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을 이 계약의 최초 계약일로 간주하여 계약경과년수를 계산합니다. 이 경우 가입자는 최초 계약일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자산관리수수료는 대기자금이 있는 경우 대기자금에서 우선적으로 취득할 수 있고, 대기자금이 부족할 경우 부족한 금액의 105/100에 상당하는 신탁재산을 매각하여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탁재산매각 금액이 자산관리수수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에 대하여 운용관리기관의 지시에 따릅니다.

6. 제5호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이 자산관리수수료에 미달할 경우 은행은 미달하는 수수료를 가입자에게 별도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7. 제1호 내지 제5호의 신탁재산 평가액은 시장가격(시장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정가액) 등을 적용하여 산출하며, 운용관리기관이 산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8. 제1호 내지 제3호의 자산관리수수료를 징수하는 시점에 가입자의 연령이 만19세 이상이고 만34세 이하인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자산관리수수료에 대하여 70%의 할인율을 적용하며, 제4호에 의한 계약 경과년수에 따른 할인율과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9. 계약서 제14조에 따라 신탁금이 1회 이상 연금의 형태로 지급된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자산관리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10. 계약자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제출하여 확인된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의 자산관리수수료에 대하여 50%의 할인율을 적용하며, 제4호에 의한 계약경과년수에 따른 할인율과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3. 제1항에 불구하고 아래의 경우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1. 퇴직급여제도로부터 일시부담금이 최초 입금된 날로부터 가입자가 30일 이내 계약해지 신청을 한 경우 해당 기간의 자산관리수수료를 면제합니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최초 부담금 입금일로부터 30일이 초과된 경우에는 전 기간에 대해 자산관리수수료를 징수합니다.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가입자가 자기의 부담으로 납입하는 개인부담금의 경우에는 자산관리수수료를 면제하지 않습니다.

년 월 일

개인형퇴직연금 자산관리신탁계약서와 [별지1] 개인형퇴직연금 자산관리계약 부속협정서의 계약 내용을 설명 듣고 이해하였으며, 이에 대해 하나은행과 계약을 체결합니다.

가입자 (위탁자 겸 수익자)	주소 :
	성명 :
은 행 (수탁자)	주소 :
	성명 :

개인형퇴직연금 자산관리신탁계약서 제32조(계약서의 작성·보관)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 자산관리신탁계약서와 [별지1] 개인형퇴직연금 자산관리신탁계약 부속협정서를 1부 작성하고 그 사본을 교부받는데

동의합니다(계약서 사본 교부).

동의하지 않습니다(원본 2부를 작성하여 원본 1부 교부).

* 이 계약서는 법령 및 내부통제절차를 준수하여 제공됩니다.



하나은행